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코스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oscom Corporation 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금융투자 유관기관·금융투자회사 및 기타 단체의 정보처리서비스업
2. 시스템개발 및 운영, 유지보수 등 시스템통합서비스업
3. 자본시장·금융 및 경제관련 정보의 수집, 가공 및 제공 서비스업
4.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임대업
5. 정보통신기기의 판매 및 임대업
6. 부가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업
7.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8. 증권망과 은행망 연계 등 타금융망과의 전자자금이체 관련 서비스업
9. 전자인증서비스, 전자증권서비스 등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업
10.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교육훈련 서비스업
11. 간접투자자산운용 관련 일반사무관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감리업 및 컨설팅업, 정보통신공사업, 수출입업, 광고업
13. 부동산 임대업
14. 상기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광고방법) ① 이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43조 제4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의 광고는 이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scom.co.kr)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백사십만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십만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 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의2(주식양도의 승인 등) ① 이 회사의 주주는 그 소유한 주식을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주주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3(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오백삼십오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0%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0조(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① 주식의 양도, 상속, 증여, 유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이 회사에서 만든 청구서에 주권과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그 설정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 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청구할 때도 이 회사에서 만든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주주명부에 그 등록 절차를 마친 다음 주권배면에 대표이사 사장의 직인을 찍어서 청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이 회사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주권의 재교부) 주권의 오손, 일부마멸, 분합 또는 배서만란으로 인하여 새 주권을 받고자 할 때는 이 회사에서 만든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오손마멸의 도가 심해서 그 진위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때 또는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새 주권을 받고자 할 때는 이 회사에서 만든 청구서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제11조에 의하여 청구한 자는 이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 또는 질권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②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할 때는 이 회사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를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5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2.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개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5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정관 제22조제1항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이 회사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법 제434조에 의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9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마다 일개로 한다.

제2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결권 행사에 있어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보존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권자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28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위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9조(보상위원회) ① 이 회사는 대표이사 사장, 전무이사(대표이사 사장을 제외한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상임감사의 보수와 퇴직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보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보상위원회는 비상임 이사로 구성한다.
 - ③ 비상임 감사는 보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보상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5 장 이사·감사 및 집행간부

제30조(이사,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 사장 1명
2. 전무이사 1명
3. 비상임이사(사외이사 또는 그 밖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등기된

-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명 이상
-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이사, 감사의 선임) ① 이사 중 대표이사 사장 및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 중 전무이사는 대표이사 사장(단, 제41조에 따른 대표이사 사장 유고시에는 당해 직무대행자)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 및 제4항 제1호에 의해 선임되는 비상임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금융투자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회사의 이사(집행간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
2. 자본시장·금융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학·경제학·경영학·전산학 기타 자본시장 및 정보통신 관계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자격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 인정되는 자

⑤ 비상임이사 중 제4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선임된 자를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라 한다.

⑥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한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2조(이사회추천위원회) 제31조 제1항의 이사회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 사장 : 3년(다만, 임기가 재직 중의 최종결산일 이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난 때에는 그 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2. 대표이사 사장을 제외한 이사 : 2년
 3. 감사 :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 ② 이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 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사장 또는 공익대표 비상임이사가 연임될 경우 제31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에 부족하게 된 때에는 퇴임하는 이사 및 감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제31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가 그 임기 중에 해당기관 또는 회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 또는 해임된 때에는 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도 또한 퇴임한다. 그러나 금융투자 유관기관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사(집행간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감사로 선임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정기 주주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 ② 보결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불구하고 제33조에 규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전무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하고 대표이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36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필요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록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급여)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급여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제40조(집행간부) ① 대표이사 사장 및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5명 이내의 집행간부를 둔다.

② 집행간부는 전무이사의 추천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다.

③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④ 집행간부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집행간부의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대표이사 사장의 직무대행) 대표이사 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 중 대표이사 사장이 미리 지정한 자, 전무이사,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장 회 계

제42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일월 일일부터 십이월 삼십일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매 결산기에 작성한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이사회에 승인을 득하여 정기 주주총회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자본변동표
5. 현금흐름표
6. 주석(註釋)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6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보 칙

제47조(규정 등 내규) 이 회사의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규칙, 기타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48조(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49조(경영공시) 이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한다.

제50조(경영성과 협약의 체결) ① 이 회사는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와 경영성과에 관한 협약(경영공시, 경영실적 평가 및 예산편성지침 등 포함)을 체결한다.

② 이 회사의 예산편성 시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및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한다.

③ 이 회사는 제1항의 협약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 경영평가

성과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